

강원도립대학교 등록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

(제정) 2011-01-11 규정 제272호
(개정) 2012-01-19 규정 제276-1호
(개정) 2012-10-15 규정 제299호
(개정) 2016-04-25 규정 제397호
(개정) 2017-02-21 규정 제448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 및 권한) ①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는 해당년도 등록금(입학금, 수업료) 책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한다.

② 위원회는 등록금산정에 필요한 자료(대학 예·결산서 등 회계관련 자료, 각종 사업계획관련 자료 등)를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7.2.21.>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7.2.21.>

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한다.<개정 2016.4.25>

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, 당연직 위원은 사무국장, 총학생회 회장·부회장·기획부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외부 전문가 1인으로 하되, 회계·교육관련분야 전문가 중 사회·경제적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12.10.15.> <개정 2017.2.21.>

제4조(위원의 임기) 당연직 위원은 그 보직기간으로 하며,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해당년도 등록금책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,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,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6조(간사와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대학 총무담당자 되며, 서기는 등록금책정 담당자가 된다.<개정 2012.10.15.> <개정 2017.2.21.>

부 칙(2011. 1. 11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1. 19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10. 15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4. 25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2. 21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